

# 202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에서는 도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202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」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6월 25일  
경기도지사

## 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
- (사업기간) 2026년 7월~11월 / 20개사 모집
- (신청기간) 2026. 7. 1.(수) ~ 2026. 7. 31.(금) 17시까지  
※ 모집인원 3배수 접수시(60개사) 조기 접수 마감
- (지원대상)

- ①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 
-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고 공장등록지만 경기도 내에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필수 제출  
※ 반려동물 범위(별첨1)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
- ②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(업력 3년 이하 기업 지원 불가)  
※ 단,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창업자 또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 공모전 입상자는 업력 3년제한 없음
-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
- ④ 통신판매업(전자상거래, 기타통신판매업) 신고 등록 기업으로, 자사몰 또는 오픈마켓(네이버, 쿠팡, 11번가 등)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 실적이 있는 기업
- ⑤ 웹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기업

### ○ (제외대상)

- 자체 브랜드(OEM 생산 포함) 제품 없이 타사 제품을 단순 유통·판매하는 기업
-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
-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
- 세금 체납 기업(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), 휴·폐업 기업
- 타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동일사업 중복 수혜 기업

○ (주 관 사) 재단법인 해피빈

○ (지원내용)

- 온라인 기획전 입점 및 프로모션(온라인 할인쿠폰) 지원
  - ※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등 스마트스토어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
- 온라인마케팅 교육 컨설팅1회
- (선택) 오프라인(반려마루) 경기도 우수 제품 전시관 입점 지원

온라인마케팅 분야 상세 지원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매체(네이버_해피빈) 內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전(가칭) 입점</li> <li>- 기획전 입점 제품 온라인 할인쿠폰 지급 및 기획전 홍보 진행 (기획전에 입점된 제품 판매 시 적용가능한 온라인 할인쿠폰 제공)</li> <li>- 기획전 운영 및 할인쿠폰 제공 外 개별 광고 및 쇼핑몰 운영관련 비용지원 불가</li> <li>-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마케팅 교육컨설팅</li> <li>- (선택) 참여기업 대상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(반려마루(경기도 여주시) 제품 전시) *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</li> </ul>

-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, **동일 제품으로 he기관 중복지원 불가**

○ (진행절차)

신청 및 평가 (7월)	지원신청서 작성 (신청기업)	• 지원신청서 작성(요구서식)
	▽	
	신청서 접수	• 온라인 신청( <a href="http://www.egbiz.or.kr">www.egbiz.or.kr</a> )
	▽	
사업 추진 (7~11월)	신청기업 심사	• 1차 심사(요건평가) • 2차 심사(정성평가)
	▽	
	지원결정	• 선정결과 개별통보(선정기업 한정)
	▽	
사업 종료	온라인마케팅	• 사전 준비사항 통보(스마트스토어 및 상세페이지 등) •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전(가칭) 입점 및 할인쿠폰 제공
	강의 및 컨설팅	•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마케팅 관련 강의 및 컨설팅 진행
	▽	
사업 종료	완료보고서 제출 (참여기업→해피빈)	• 완료보고서 등 제출(요구 서식 및 증빙자료)

(※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
## 2 모집 및 선정

- 신청방법 : 경기기업비서(구. 이지비즈)([www.egbiz.or.kr](http://www.egbiz.or.kr))를 통한 온라인 접수
  - 기업회원으로 가입/로그인 후 사업명 검색하여 접수 진행
-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 사항

공 통 사 항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수기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</li> <li>-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, 동일 과제로 he기관 및 he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</li> <li>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</li> <li>- 선정 후 과제 진행 시 과제 및 기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한 과제 불인정 등의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</li> <li>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)에게 있음</li> </ul>
온라인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마케팅 참여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전자상거래, 기타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'통신판매업 신고증'을 보유하여야 함</li> <li>- 온라인마케팅 분야에 선정된 기업은 기획전 입점을 위해 온라인 매체(네이버)의 스마트스토어에 가입 및 제품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(8~11월 예정) 동안 기업 별 스마트스토어는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. 이때,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등 스마트스토어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운영 및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함</li> <li>- 온라인 기획전에 지급되는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소비자가 쿠폰 다운로드 후 결제 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</li> <li>- 기획전 홍보·광고의 경우 경기도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노출 빈도 및 채널이 변경될 수 있음</li> <li>- 기업에 개별 비용(온라인 광고 및 쇼핑몰 운영 관련 비용 등)은 지원되지 않음</li> <li>- 지원결정 이후 '지원제외 대상'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, 경기도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결정(협약) 취소 및 중도 제외할 수 있음</li> </ul>

○ 제출서류

분류	내용	제출여부
필수서류	① [서식 제1호]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 1부	
	② [서식 제2호] 온라인마케팅 추진계획서 1부	
	③ [서식 제3호]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
	④ [서식 제4호]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
	⑤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	
	⑥ (신청기업) '통신판매업 신고증' 사본 1부 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기업명, 소재지, 대표자 성명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-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	
	⑦ (신청기업) 중소기업 확인서 1부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	
	⑧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-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 <a href="https://www.4insure.or.kr">https://www.4insure.or.kr</a> )에서 발급 가능	
	⑨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	
선택서류 (해당시)	① 공장등록증명 1부 - 공장만 경기도에 소재 시 필수 제출 서류 - 정부24에서 발급가능	
	② 보유인증서 사본 - 경기유망중소기업, 스타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- 국내외 특허 및 상표권, 규격인증, 품질인증, 신기술마크 등	
	③ 보유 기업/제품 홍보물 각 1부	
	④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제품의 상세페이지 캡처(접속 URL 링크 기재)	

○ **평가방법**

- **1차 심사** : 자격요건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2차 심사 상정

※ **사업 일정 또는 모집 상황에 따라 수시 심사할 수 있음**

- **2차 심사** : 온라인 MD 등 5인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참가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한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

심사항목	배점	세부내용
총 계	100	·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친 총점
시장성	20	· 보유 제품의 온라인 판매 적절성
기술성	20	·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혁신성
사업성	20	· 제품 시장 경쟁력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·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, 고도화 정도
성장성	20	· 기업 성장성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
기대효과	20	·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관련 산업 파급효과

※ **2차 심사 대상 기업에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**

- **예비 기업 선정** : 최초 선정 시 탈락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을 0.5배수 내외로 선정 하고 최초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등 **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**

**3 문 의 처**

○ (문의처)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☎ 031-8030-4483

## 동물보호법

[시행 2025.1.3.] [법률 제19880호, 2024.1.2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"반려동물"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## 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5.27.]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, 2024.5.27., 일부개정]

**제3조(반려동물의 범위)** 법 제2조제7호에서 "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.

##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25.01.01.] [경기도 조례 제 8254호, 2023. 10. 11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반려동물"이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개·고양이·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.
2. "반려동물산업"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.
3. "반려동물 의료·돌봄 서비스"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·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4. "사회적경제조직"이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.